

제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556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원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1. 2. 24. 체결된 제주시 C 전 4,311㎡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주시 C 전 4,31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1. 2. 25. 접수 제17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21. 1. 15. 제주시 D 외 1필지를 양도하였다. B는 2021. 3. 31. 제주세무서장에게 산출세액 363,366,661원에서 8년 이상 자경감면액 100,000,000원을 뺀 나머지 중 분납분을 제외하고 납부세액 131,683,331원의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세무서장은 2021. 5. 12. B에게 위 예정신고 양도소득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1,349,754원을 합한 133,033,085원을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제주세무서장은 B가 양도대상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1. 8. 15. B에게 8년 이상 자경감면액을 제외하고, 관련 무신고가산세 10,000,000원, 납부지연 가산세 5,058,170원을 추가하여 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378,424,831원으로 경정한 다음, 이미 고지한 133,033,331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391,748원을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는 역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한편 B는 2021. 2. 25. 남편인 피고에게 제주시 C 전 4,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24. 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비상장주식 액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세무서장의 경정결정이 잘못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B는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362,016,907원이 성립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B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국세채권을 보유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에게 명의신탁 해 둔 재산으로서 이 사건 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B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부터 B의 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